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.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(안)에 대한 수정(안)

|   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관련<br>229호 |
|----------|------------|

제출년월일 : 2006. 6. 22.  
제 출 자 : 김영진 위원

## 1. 수정이유

발주 부서장의 자의에 의한 판단을 배제하기 위하여 감독일수를 발주 부서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삭제하였으며, 주민참여 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교통주차시설 공사를 추가

## 2. 주요내용

- 안 제11조 중 “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감독일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 부서장이 정한다” 를 “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” 로 수정
- 각호 중 1. “하수도 설치 공사” 를 “하수공사” 로
  - “8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” 를
  - “9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” 로 수정
  - “8. 교통주차시설 공사” 를 신설

**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.운영 및  
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대비표**

| 제 정 안  | 수 정 안   |
|--|---|
| <p>제11조</p> <p>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(연간단가계약 제외)의 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<u>대상으로 하며 감독 일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 부서장이 정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하수도 설치 공사</u></li> <li>2. 보안등 공사</li> <li>3. 보도블록 설치 공사</li> <li>4. 도로개설 및 확·포장공사</li> <li>5. 사회복지시설 등 공용건축물 증·개축공사</li> <li>6. 공중화장실 공사</li> <li>7. 공원녹지관련 공사</li> <li>8. <u>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</u></li> </ol> | <p>제11조</p> <p>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상 10억원이하(연간단가계약 제외)의 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<u>대상으로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하수공사</u></li> <li>2. 보안등 공사</li> <li>3. 보도블록 설치 공사</li> <li>4. 도로개설 및 확·포장공사</li> <li>5. 사회복지시설 등 공용건축물 증·개축공사</li> <li>6. 공중화장실 공사</li> <li>7. 공원녹지관련 공사</li> <li>8. <u>교통주차시설 공사</u></li> <li>9. <u>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</u></li> </ol> |